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

내 용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같은 법 제7조 및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유원시설, 펜션업, 야영장 등의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를 포함하여 1,485개소의 하수·분뇨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7. 6.까지 1개월 동안 지도·점검하여 개선명령 109건, 과태료 113건 112,736천원 부과, 고발 3건을 처분하였다.

1. 남해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남해군 ○○○○과는 “○○○ ○○○○ ○○○터”(○○면 ○○대로 0000) 내 시설용량 60톤/일의 야외공중화장실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시(2016. 10. 25) 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경상남도○○○○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보다 BOD는 125mg/L 초과, SS는 57.2mg/L 초과, T-N은 3.54mg/L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분석결과>

(단위 : mg/L, 개/L)

수질항목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기 준	10이하	10이하	20이하	20이하	3,000이하
분석결과	135.0	67.2	23.54	1.848	2
초과농도	<u>125초과</u>	<u>57.2초과</u>	<u>3.54초과</u>	적합	적합

남해군 ○○○○과는 2016. 6. 7.부터 2016. 7. 6.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 경상남도 지도·점검 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하는 동 취락시설을 지도·점검 계획에 포함하여 점검하거나

남해군 ○○○○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가측정을 보다 엄격히 실시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적정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하수도관리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민간시설 보다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2. 합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합천군 ○○○○과는 “○○산주차장”(○○면 ○○리 0000-0번지) 내 시설 용량 10톤/일의 야외공중화장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시(2016. 10. 25) 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배출

구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경상남도○○○○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보다 BOD는 32mg/L 초과, SS는 4mg/L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분석결과>

(단위 : mg/L, 개/L)

수질항목	BOD	SS	비고
기 준	20이하	20이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일 50톤 미만은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제외
분석결과	52.0	24.0	
초과농도	<u>32.0초과</u>	<u>4.0초과</u>	

합천군 ○○○○과는 2016. 6. 7.부터 2016. 7. 6.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 경상남도 지도·점검 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하는 동 취락시설을 지도·점검 계획에 포함하여 점검하거나

합천군 ○○○○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가측정을 보다 엄격히 실시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적정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하수도관리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민간시설 보다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3. 하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관리 소홀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3.산정방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부적정

<개인하수처리구역 및 유입계통>



제출된 설치신고서에 산정한 오수발생량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2. 25.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제출된 설치신고서에서 산정한 오수발생량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하동군 ○○○○과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야외화장실의 바닥면적 46.06m^2 에 $170\ell/\text{m}^2$ 을 곱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7.83톤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야외화장실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 경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및 주변 관광오수 등을 통합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오수발생량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 탐방객 등 이용자가 급증하는 행락철에는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의 바닥면적 46.06m^2 에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화장실 원단위 $170\ell/\text{m}^2$ 를 곱하여 산정한 오수량과 ○○○ 경내 건축물 바닥면적에 사찰 원단위 $12\ell/\text{m}^2$ 곱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을 더하여 전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오수량 및 오수농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산정>

산정방법	설치신고 확인시 산정한 오수량	감사시 산정한 오수량	감사시 지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7.83톤 [산정식] 46.06㎡(야외욕외화장실바닥면 적)×170ℓ/㎡(화장실 원단위)	23.01톤 [산정식] 46.06㎡(야외화장실바닥면적)×170ℓ/ ㎡(화장실 원단위)+ 1,265.28㎡(쌍계사 경내 건축물 바닥면적177)×12ℓ/㎡(사찰 원단위)	과소산정 (15.18톤)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	0톤 [산정식] 별도 고려하지 않음	15.75톤 [산정식] 관광오수 5ℓ/인 ¹⁷⁸⁾ ×3,150인/일 ※ 최근 탐방객수(감사시 확인) ▪ 830명(10월22일, 토) ▪ 3,150명(10월23일, 일) ▪ 380명(10월24일, 월)	과소산정 (15.75톤)
계	7.83톤	38.76톤	과소산정 (30.93톤)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위 산정방법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설치신고 시 확인한 7.83톤 보다 30.93톤이 더 많은 38.76톤으로 산정하여 설치신고 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확인 및 준공검사를 소홀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시(2016. 10. 25.) 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경상남도○○○○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보다 BOD는 127mg/L 초과, SS는 61.2mg/L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분석결과>

(단위 : mg/L, 개/L)

수질항목	BOD	SS	비고
기 준	20이하	20이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일 50톤 미만은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제외
분석결과	147.0	81.2	
초과농도	<u>127.0초과</u>	<u>61.2초과</u>	

177) 명부전 71.7㎡, 반야실 70㎡, 설선당 155.3㎡, 육화료 189㎡, 해행료 675.6㎡, 방장실 103.68㎡

178) 관광오수 원단위를 임의로 5ℓ/인 사용하여 추정함(원단위 및 탐방객수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조사 필요)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하수도관리청인 하동군 ○○○○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하는 동 취락시설, 취락시기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했으나

동 시설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어 공원관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사유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 합천군수, 하동군수는

- 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 ② 하동군은 쌍계사 경내 야외화장실에 대하여 오수발생량을 재산정 한 후 필요시 처리시설을 증설토록 하거나,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적정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